

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
- 나. 의안번호: 제1149호
- 다. 제출일자: 2023. 08. 14
- 라. 회부일자: 2023. 08. 21

### 2. 제 안 사 유

- 가. 한강공원에 친환경 순환관람차를 도입하여 생태환경 및 시설물과 연계하는 등 관광 활성화 도모
- 나. 한강 개최 축제 및 시설물에 대한 접근편의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근거, 방식 및 범위 규정
- 나.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이용대상 및 이용료 규정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: 협의 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 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 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사항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23. 6. 16.~7. 6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에 도입하려고 하는 친환경 순환관람차 운영에 대한 근거와 방식 및 범위를 규정하고, 이용대상 및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입법 취지 및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의 6.6%에 해당하는 면적(수역과 둔치 39.8km<sup>2</sup>)을 차지하는 11개의 한강공원은 올림픽대로 등 제방도로로 인한 단절, 대중교통과의 연결 곤란 등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음.

따라서 서울시가 ‘이동이 편리한 한강’<sup>1)</sup>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그 의미가 충분함.

특히 외부에서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, 자전거 등 보조수단을 갖추지 않은 보행자의 경우 공원 내부에서 도보로 이동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므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동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.

---

1) 이동이 편리한 한강 : 「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」 4대 핵심전략 중 ‘이동성 확장’ 과제

## 2) 세부 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의 생태환경과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목적(제1조), 정의(제2조), 순환관람차의 운영(제4조), 노선 및 운행범위(제5조), 이용료(제6조), 이용약자에게 편의제공(제7조) 등 총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〈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〉

조(제 목)	내 용
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	- 목적: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- 순환관람차, 이용자 등 관련 용어 정의
제4조(순환관람차의 운영)	-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제5조(노선 및 운행범위)	- 순환관람차 운행노선,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 규정
제6조(이용료)	- 순환관람차 이용료에 관한 사항 규정
제7조(이용약자에게 편의제공)	- 이용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 규정

- 세부적으로 본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‘관광 활성화 도모’를 ‘이용 편의성 제공’에 앞서 제시하고 있고 조례안 제명에도 ‘순환관람차’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, 조례 제정의 목적이 ‘관광 활성화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임.

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정책 중에서 관광 관련 내용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‘이동이 편리한 한강’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면, 안 제1조의 내용을 ‘이용(이동) 편의성 제고’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3조는 순환관람차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안 제2조 제2항의 ‘순환관람차’ 정의와 별도로 순환관람차의 명칭에 관한 사항까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임.

특히, 안 제3조 단서에서 순환관람차 운행지역의 특성과 이용자 볼거리·즐거거리 제공 상황 등에 따라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면, 순환관람차에 대한 명칭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조례 운영상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4조는 순환관람차의 운영방식(직접운영, 위탁 등)·경비지원 등 순환관람차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견은 없음.

다만, 세부적으로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환관람차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, 서울시가 예산부족의 사유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환관람차 도입의 필요성 및 공익적 측면에 미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5조의 노선 및 운행범위와 관련해서는 한강공원의 현장 여건과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른 현장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례<sup>2)</sup>를 참고하여 순환관람차 운영을 위한 적정 노선 및 운행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.

- 안 제6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제1항에서 이용자 누구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관람차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상황 변화를 가정하여 단서에 이용료 징수와 제2항 및 제3항에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 시점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---

2) [별첨] 타시설 유사사례 정리 참고 - 미래한강본부 제공

이와 관련하여 당장은 무료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에 규정하고 향후 이용료 징수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용료 징수와 한시적인 무료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- 안 별표1의 순환관람차 이용료 범위(어린이·청소년 500~2,000원, 성인 1,000~3,000원)는 현재 유사 이동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및 월드컵공원의 이용료를 고려할 때,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〈순환관람차 등 이용료(범위) 현황〉

(단위 : 원)

구 분	어린이·청소년	성인(19세 이상)
한강 순환관람차	500~2,000	1,000~3,000
서울대공원 코리리열차	1,000	1,500
월드컵공원 뽕이전기차	1,500	2,000

- 안 제7조는 이동약자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‘약자와의 동행’이라는 서울시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이용자 편의 제공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더 중요한 요소인바,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순환관람차 이용 제한,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- 코로나 엔데믹 선언(2023년 6월) 전후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나 날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.

다만, 본 조례안은 체계나 내용 측면에서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는바,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순환관람차 운행 또한 ‘한강 접근성 개선’을 위한 다른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[별첨] 타시설 유사사례 정리

구 분	서울대공원 '코끼리 열차'	월드컵공원 '맹꽁이 전기차'		
도 입	2009년	2010년		
주 요 시 설	승강장, 매표소, 차량 12대(96명/대)	매표소, 차고지, 차량 20대(5명/14명)		
운 행 구 간	동물원~서울랜드~안내소	3개 노선 (1.난지천~하늘공원, 난지천~노을공원, 노을주차장~노을캠핑장)		
운 행 시 간	09:00~19:10(5분 간격) ※ 노선별 상이	10:00~21:00(10~30분 간격) ※ 노선별 상이		
편 의 사 항	냉·난방 불가 (휠체어 이용 곤란)	냉·난방 불가 (휠체어 이용 곤란)		
이 용 요 금	성인 1,500원/ 청소년·어린이 1,000원	성인 2,000원, 어린이 1,500원		
운 영 방 식	사용허가 (동원건설산업(주), 사용료 15억원/연)	사용허가 ((주)마살자동차, 사용료 5억원/연)		
이 용 자 수	연 250만 명 내외	연 30만명 내외		
사 진				
기 타 사 항	이용객 저조로 운영 중단	스카이 리프트, 무료 순환버스 별도	운전자 부주의로 사고('18년)	겨울철 AI발생으로 운영 중단